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포항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5. 12.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건설사업관리용역 원가계산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시설물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등 사후관리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인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1)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과)에서는 위 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대가

이외에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공사(★★★★★★ 문화공원 조성, ⊙⊙⊙⊙⊙⊙ ☾☾☾ 조성, ☝☝☝, ♂♂♂♂♂♂) 준공 후 시설물이 포항의 새로운 관광휴양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자립운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학술용역 대가기준에 따라 용역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산정하여 정당한 발주절차(일반경쟁입찰 등)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인 건설사업관리용역비에 부당하게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부당하게 계상된 학술용역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4 ☎☎☎☎☎☎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포항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전 그 부분의 촬영계획 등을 검토하고 준공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소속기관의 주관과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1차분 공사감독자 ☞☞☞은 위 공사의 부대공 침사지 법면 A=1,861㎡를 P.P마대 쌓기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도급자가 단가가 저렴한 톤마대 공법으로 시공 후 준공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차수분 준공계에 설계대로 준공되었다고 확인 날인하여 2014.08.04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2차분 공사감독자 ❖❖❖은 배수공의 터파기 공법(V=840㎥)이 수중터파기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터파기 결과 수중이 아닌 일반터파기 공법으로 시공 완료하였음에도 후임 공사감독자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 하였고 2015.09.01. 변경 선임된 공사감독자 ✺✺✺은 도급자가 제출한 준공계에 설계대로 준공되었다고 확인 날인하여 2015.09.16.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L형측구 L=2,848m 기초콘크리트의 한쪽 면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과다 집행(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에 대하여 회수(00,000천원)와 감액(00,000천원)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정비사업 추진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탈면고르기 시공 관련

포항시 ☊☊과에서는 2012. 12. 3. ㈜ᄋᄋ 대표 ♂♂♂와 "⊙⊙ ❂❂❂❂ 정비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6.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제방 성토부 비탈면고르기(A=22,682㎡) 시공을 하면서 설계서에는 인력으로 비탈면을 고르도록 반영되어 있으나 기계로 고르기 작업하였음에도 정산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 지급(00,000천원) 및 계상(0,000천원)하였다.

2. 원자재 운반비 관련

원자재(혼합쇄석, 사석) 운반비는 경비 항목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으로 분리 계상하여 불필요한 제경비 0,000천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 ❂❂❂❂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 00,000천원 정도를 과다 집행(00,000천원) 및 계상(0,000천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과다 집행(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에 대하여 회수(00,000천원)와 감액(0,000천원)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공업용수 건설공사 추진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 ＊＊＊＊＊＊＊＊＊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2008.11.19. (주)ᔕᔕᔕᔕᔕᔕ 대표 ⊙⊙⊙와 공사계약(0,000백만원)을 맺고 2008.11.20. 착공하여 2014.12.3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 ＊＊＊＊＊＊ 공사지연에 따라 2013.12.02. 부터 시공중지(진도 87%) 중에 있으며,

상기 사업의 책임감리용역은 2009.08.04.(주)○○○○○○○○ ❑❑❑과 용역계약(000백만원)을 맺고 2009.08.13. 착공하여 2012.07.25. 준공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에 따르면 특정공종의 삭제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건설공사 시공중지 부적정

포항시 ❊❊❊과에서는 ㈜☝☝☝☝☝☝ 대표 ☞☞☞와 공사계약을 맺고 2008.11.20. 착공하여 2014.12.31. 준공예정인 ❖❖❖ ❋❋❋❋❋❋❋❋ 공업용수 건설사업의 전체 사업량 정수시설 Q=40,000톤/일, 송수관로 L=15.6km, 배수지 V=4,000톤 중 2013.12.02. 까지 정수시설 Q=40,000톤/일 및 송수관로 L= 14.5km를 완료 하였으며, 잔여 사업량 배수지 V=4,000톤과 송수관로 L=1.1km는 향후 개발예정인 ❖❖❖ ❋❋❋❋❋❋ 기반시설(도로 등) 부지를 활용하여 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 ❋❋❋❋❋❋는 포항시 ❊❊❊❊과에서 '10.11.08. 산업단지지구지정 승인 이후 '11.10.26. 우선공급지 공사만 착공하고 '12.05.31. 준공처리하여 감사일 현재('15.10.30.) 사업타당성 조사용역('15.08.~'16.01.)만 수행중에 있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입주업체 모집 및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으로 기반시설 완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예측 불가)

이에 따라, 기 공사계약 되어 있는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장기간 시공중지되어 재 착공이 가능할 시에도 간접비, 물가상승률 및 금융비용 추가 지급 등 포항시의 재정상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 ❋❋❋❋❋❋❋❋ 조성사업(❊❊❊❊과)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재정상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잔여 사업량(배수지 V=4,000톤, 송수관로 L=1.1km)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타절 준공 처리하지 않고 2013.12.02. 시공중지 후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2. 책임감리업무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르면 발주청은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수를 조정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 공업용수 건설사업의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에 따라 감리원을 조정배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당초 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그대로 투입하여 용역비 지급을 완료하여 공사(진도 79%)가 준공되지 않은 2012.07.25.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준공처리하는 등 책

임감리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용역비 000,000천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설치공사 설계변경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포항시 ✚✚✚과는 2010.05.13. ⊙⊙⊙⊙건설(주) 대표 ☊☊☊과 공사계약(0,000백만원)을 맺고 2010.05.19. 착공하여 2016.12.31. 준공 예정으로 ❋❋·❋❋ ✪✪✪✪✪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별도 발주할 때에도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에 준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나 장래시설물 하자구분 곤란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부적정

포항시 ✚✚✚과에서는 ❋❋·❋❋ ✪✪✪✪✪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사업구역 밖 00면 00 1, 2리 4개 부락의 지선공사(D=75~37mm, L=7,820m)를 별도 발주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상기 공사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5.02.26. 계약금액을 증액 변경하여 ⊙⊙⊙⊙건설(주) 대표 ☊☊☊에게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2. 차선도색(융착식) 과다 적용

차선도색(1,223㎡) 관련 설계변경 내역을 작성하면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상온형 차선도색(0,000~0,000원/㎡)이 적정한데도 고가의 융착식(00,000/㎡)을 반영하여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인입 원수관로 이설공사 설계변경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포항시 ○○○과는 2014.04.10. ❑❑건설(주) 대표 ☆☆☆과 공사계약(0,000백만원)을 맺고 2014.04.11. 착공하여 2016.03.30. 준공 예정으로 ********* 인입 원수관로 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부적정

포항시 ○○○과에서는 2015.10.14. ********* 인입 원수관로 이설공사의 증액(000백만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트파일 813본(L=6.91m)에 대한 작업효율(Q=0.42)을 잘못 적용하여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과다 계상하였고,

시트파일의 가시설은 별도 할증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할증량 72.4톤을 산정하

여 손료 및 운반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부당하게 계상하였다.

2. 특허 반영 부적정

간이흙막이 L=156.3m(000백만원)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면서 SK판넬(000,000원/m) 등 시공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가시설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고가의 싱글(더블) 슬라이드 특허공법을 반영(000,000원/m)하여 시공함으로써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00,000천원) 및 낭비(00,000천원)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2014.12.29. ㈜○○○○건설 대표 ✈✈✈와 공사계약(0,000백만원)을 맺고 2014.12.31. 착공하여 2016.12.29. 준공 예정으로 ★★★ ❊❊·★★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르면 원재료의 운송비 및 시험검사비는 경비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소규모(인력식) 아스콘포장 과다 적용

포항시 ☞☞☞과에서는 ★★★ ❊❊·★★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기계화 시공이 가능한 아스콘포장 4,765㎡에 대하여 고가의 인력식 소규모아스팔트 포장으로 적용하여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2. 원자재 운반비 등에 제경비 과다계상

보조기층(5,895㎥)과 모래(4,566㎥) 등 원자재 운반비와 시험검사비는 경비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00,000천원을 과다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 건축공사 추진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같은법 시행령」제74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과에서는 "**✈✈✈✈✈✈ ✉✉✉✉조성 건축공사**"를 '14.08.25 ㈜❊❊❊❊건설 대표 ○○○과 도급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같은해 '14.08.28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인조초가지붕 공사에 불필요한 군새가 반영되어 있고, 알매흙 두께는 8cm면 가능한데도 10cm 두께로 과다하게 설계하였으며, 천정고가 낮은 화장실의 경우 이동말비계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수평비계로 과다 설계하는 등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15.10.30.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공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설치공사 공기연장 소홀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포항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12.03.22)」“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0.1%)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 ✈✈✈✈ ✆✆✆✆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14.10.27. ❑❑건설(주) 대표 ❋❋❋과 공사를 계약하고 ’14.11.03 착공하여 ‘15.09.16. 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일 5일전(‘15.09.11.) 공사구간 내 간판철거 및 재설치 협의 지연을 사유로 ’15.09.12.부터 ‘15.11.10.까지 55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간판철거 및 재설치 민원은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해결될 사안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천정공사 등과는 무관하므로 공기 연장의 사유는 되지 않으며, 더욱이 공기를 연장한 ‘15.09.11.에는 저층부 천정 금속작업, 아스콘포장 및 도색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률은 89%였으며, ’15.10.30. 감사일 현재까지도 저층부 천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이 종료되어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공사의 준공과는 무관한 사유로 55일간의 공사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건설㈜ 대표

✲✲✲에게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00,000천원(000,000천원 × 55일× 0.1%)을 납부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이 포항시 ✦✦✦✦과에서는 ✉✉✉✉ ✈✈✈✈ ✆✆✆✆ 설치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